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1 1 27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광물자원팀 황의덕 팀장,		(02-2110-5437)

광업권설정 및 관리제도 전반을 선진체제로 개편

- 1. 28 -

☐ **지식경제부(**)는 변화하는 광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업법 및 하위법령등 **광업제도 전반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진체제로 개편하여 1 28 부터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혼선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지식경제부 및 시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대상 **교육실시**, ② , 광업인에 대한 **안내자료 발송**, ③**광업법령 3 비교해석 인쇄·배포**, ④**광업법 축조해석 편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새롭게 시행되는 광업제도는 첫째, 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 " " "로 **구분하여 설정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 **광체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 " **설정을 허가**받아 **탐사**를 하여야 하고

- **탐사결과** 광종별로 정해놓은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채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 " **설정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 “ ” 존속기간은 **20 년**으로 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조광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 “ ” 존속기간은 **7 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이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 **둘째,** 존속기간 만료나 취소 등으로 **광업권이 소멸되는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기간을 기존 6 1 년으로 연장**하였다.

※ 광업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같이 적용하도록 하여 자진폐업 등록 후 재출원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행사(, 공작물의 설치 등)를 하면서 발생한 광물(광물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는 지소유자(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 의 소유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넷째,**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 ”**과 국내 부존상황으로 보아 법적 **보호가치가 낮은 “ , 사철(砂鐵, 사석(砂錫”**을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물에서 제외**시켰고, **“남정석(藍晶石 은 홍주석(紅柱石 ”** 및 **“규회석(硅灰石 은 석회석”**로 **각각 포함**시켜 분류하였으며, 법률과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세륨, , 탄탈늄**을 **“희토류 광물”**로 묶어서 규정하는 등 **법정광물의 종류를 既存 66 종에서 59 종으로 재분류**하여 규정하였다.

□ **다섯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업권의 취득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 .**

※ 기존의 광업법제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의 광업권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 규정이 전혀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개정 광업법제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여 이러한 비판을 해소.

□ **여섯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최대한 종전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개정법 시행당시** "　　, 　　, 설정등록된 광업권 중 채광계획인가 받지 않은 건"과 "　전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 중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 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개정법 시행당시**에 이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　　)에 대하여는 **개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광업권**에 대하여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개정된 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에 관한 규정, 소멸된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별 첨 1. 광업제도 변천사
2. 외국의 광업권 설정제도
3.　　(　　·　　)

【 】

광업제도 변천사

□ 조선시대의 광업제도 특징

○ **조선초기**에는 採金 採銀 정부가 군인을 직접 동원하였고 산출된 광산물을 국가가 소유하는 등 **강력한 국가 직영체제**

○ **1440 (23) 터** 국가 운영체제에서 **민간인에게 채굉, 제련을 위임**하고 일정량의 대물(銀 : 납세하도록 하는 **공납제 실시**

○ 중종은 납곡채은제도(納穀採銀 貢錢採銀 ,
선조는 년예상납제(年例上納制 徵稅制 ,
조선말 덕대제도(德大制度 도입

□ 근· 대 광업제도 도입 배경

○ **1895 32** 에 개채 (砂 採條例 제정하였고 그 후 미국의 운산금광개발권 득어화 일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의 지하자원을 개발에 이 하 려 는 의도가 반영된 **1906 년 종합 광업법제** (한제국 광업법 :) **도입**

○ **1915 년 일본**은 개발 위주의 광업제도인 **조선광업령을 제정**하여 강점기부터 광복 전까지 운용

○ 1951 , 우리나라 산업 현대화의 기틀이 되는 개발법으로 현재까지 운용

□ 광업제도 연혁

○ 1895 (32) " " 우리나라 최초의 광업법제

○ 1906 (10) " " 최초의 종합 광업법제

○ 1915 "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광업법제 **(탐사권과 채굴권을 통합한 통합 광업권제를 도입)**

○ 1951 년 현행 광업법 제정

○ 2009 27 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의 골격 유지

○ 2010 년 탐사권, (2011)

【 】

외국의 광업권 설정제도

□ 광업권의 성격

○ **영미법계(**) : 광물자원 탐시/ 채굴권을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봄

○ **대륙법계(**) : 광물자원 탐시/ 채굴권을 토지소유권과 **독립권리**로 규정

□ 탐사권과 채굴권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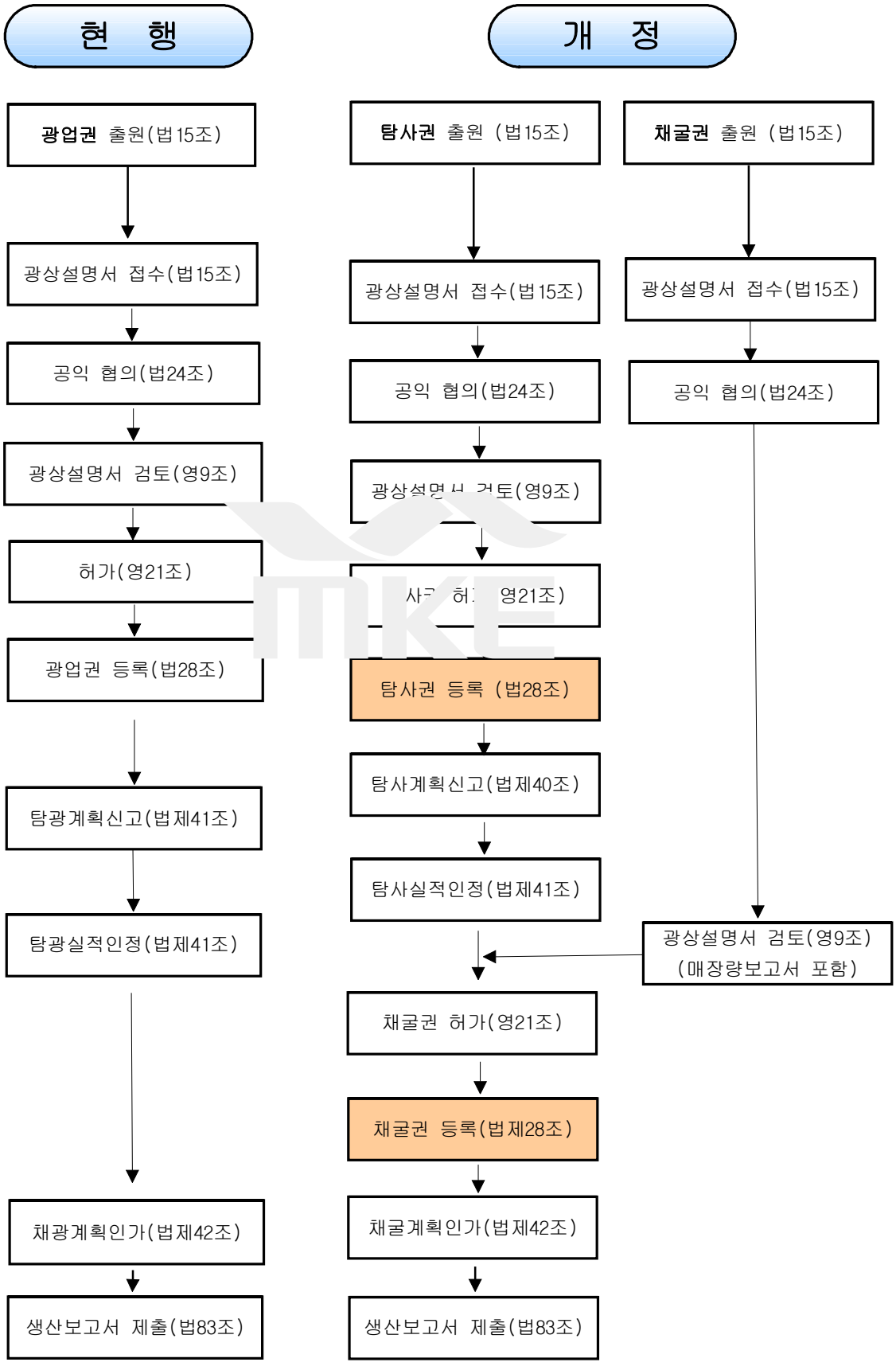
구분		탐사		채굴		권리부여
		권리성격	기간	권리	기간	
영미법계	미국	탐광허가	4 년	借區	10~20 년	사계약
	캐나다	탐광허가	4 년	借區	10~21 년	사계약
	호주	탐광허가	6 ~5 년	借區	10~21 년	사계약
대륙법계	독일	계약	계약기간	광업권	무제한	선원주의
	프랑스	독점탐사허가	9 년	특허	15 년	능력주의
	일본	탐사권	6 년	채굴권	무기한	선원주의
	한국	탐사권	3 년	채굴권	20 년	선원주의

□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부여

구분		광업권 부여 여부
영미법계	미국	자연인(미국시민 또는 미국시민 의사 표명 자) 법인(,)
	캐나다	자연인(), ()
	호주	자연인(), ()
대륙법계	독일	자연인(), ()
	프랑스	자연인(차별 없으나 국내에 주거할 것), ()
	브라질	자연인(), ()
	멕시코	자연인, 법인 공히 취득자격 불인정
	일본	원칙적으로 취득불허, 상호조약에 따라 인정

【 】

광업권 출원 및 설정 절차(·)


현 행
광업권 출원(법15조)
광상설명서 접수(법15조)
공익 협의(법24조)
광상설명서 검토(영9조)
허가(영21조)
광업권 등록(법28조)
탐광계획신고(법제41조)
탐광실적인정(법제41조)
채광계획인가(법제42조)
생산보고서 제출(법83조)
개 정
탐사권 출원 (법15조)
광상설명서 접수(법15조)
공익 협의(법24조)
광상설명서 검토(영9조)
허가(영21조)
탐사권 등록 (법28조)
탐사계획신고(법제40조)
탐사실적인정(법제41조)
채굴권 허가(영21조)
채굴권 등록(법제28조)
채굴계획인가(법제42조)
생산보고서 제출(법83조)
채굴권 출원 (법15조)
광상설명서 접수(법15조)
공익 협의(법24조)
광상설명서 검토(영9조)
(매장량보고서 포함)